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글로벌 물류업계,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응 가능하다”로 전망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높은 연료비, 과잉선박 및 계약 지연으로 올해는 해상운송 험난
2. 코로나바이러스19, 중소 선사에게 더 큰 고통
3. 스마트해운위원회, ISO 19848 데이터 표준 동의



공지사항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명사 스피치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정책들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2020. 2. 25.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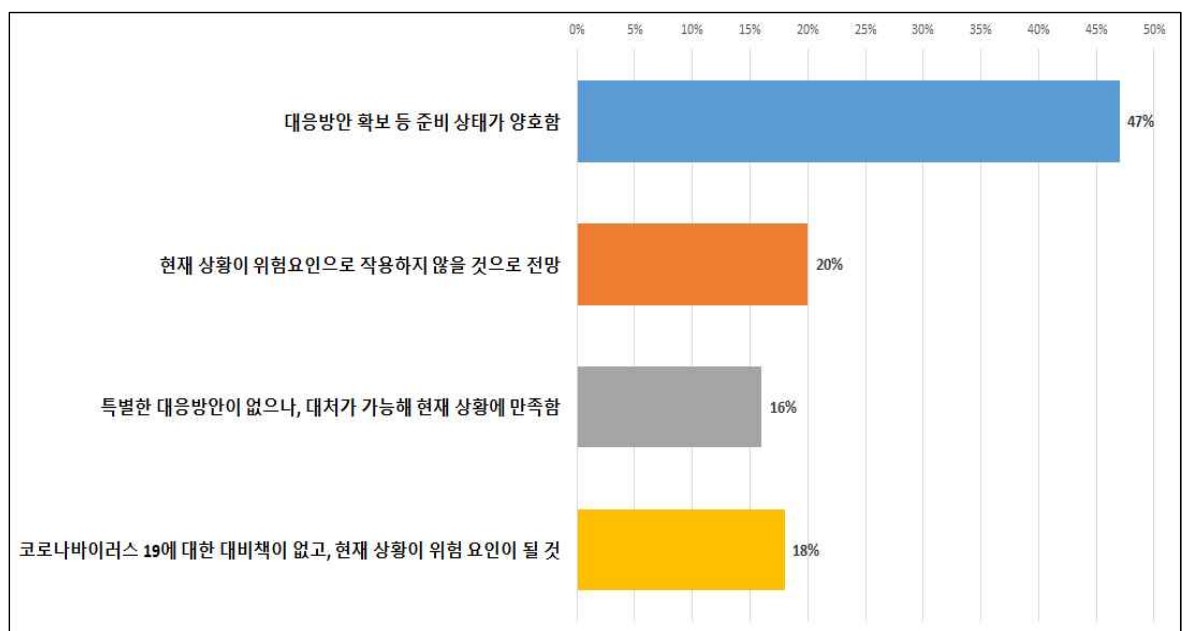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글로벌 물류업계,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응 가능하다”로 전망

- 물류 정보 전문 분석업체 TI(Transport Intelligence)에서는 총 101개 사에 달하는 글로벌 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 조짐에 대비, 업체 별 대응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결과 전체 응답의 절반에 가까운(47%) 업체가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조짐에 따른 대응방안 확보 등 준비 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하는 등 조사 대상 물류업체의 약 80%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19의 대응 능력에 대해 낙관적으로 응답함
 - 긍정적인 응답에서는 현재 상황이 위험(risk)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20%),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으나 대처가 가능하기에 현재 상황에 만족(16%) 순으로 현 상황을 진단함
 - 그러나 나머지 응답 업체(약 18%)는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대비가 없고, 현재 상황이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함

글로벌 물류업계의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TI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MI 재작성

■ 참고자료 : www.ti-insight.com, 2020.2.27.(검색일 2020.3.2.)

김광모 연구원

051-797-4616, momo09010@kmi.re.kr



높은 연료비, 과잉선복 및 계약 지연으로 올해는 해상운송 험난

- AlixPartners의 2020 Global Container Shipping Report에 따르면, IMO 2020 호환연료 비용 증가와 코로나 바이러스19 및 무역 부진 등의 이유로 2020년 해상운송업체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불확실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운송업체는 올해 수지 균형을 맞추고 가격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 동 보고서는 또한, 화주업체들은 선사들의 운송비 증가 대처 능력 및 운송업체의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함
 - AlixPartners의 운송 및 인프라 담당 이사인 Marc Lampieri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운송업체의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따라서 화주들은 현재의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면 안될 것이라고 제언함
- 선사들은 IMO 2020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저유황연료(LSFO)로 전환하는 한편, 다른 선박은 보다 저렴한 중간급 유황연료(IFO)와 스크러버를 사용하여 비용을 낮추고 있음
 - AlixPartners는 연료 공급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의 혼합을 연료 소비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선박 간의 유류 할증료(BAF) 차이 분석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저유황연료의 가격이 기존의 연료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해운업계의 부채와 수익성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해운업계의 파산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 Drewry는 IMO 2020 규제 실시 이후 아시아-미주 노선에서 2020년 1분기 기준 40피트 컨테이너당 유류 할증료는 5%에서 40% 증가했다고 밝힘

■ 참고자료 :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high-fuel-costs-overcapacity-contract-delays-threaten-ocean-shipping/573285/>

오연실 연구원

051-797-4607, ohys@kmi.re.kr

코로나바이러스19, 중소 선사에게 더 큰 고통

-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해운·물류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선사들의 막대한 매출 손실이 예상됨
 - 세계 최대 제조품 수출국이자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의 무역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유럽 및 북미와 중국을 연결하는 주요 항로를 통한 수송 건의 거래가 감소함
 -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지난 주 16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가 유휴 상태였음
 - 산업분석회사 Sea-Intelligence Consulting은 세계 10대 선사의 매출 손실이 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중소 선사들은 대기업 선사보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더 취약함
 - 머스크(AP Moeller-Maersk), 코스코(Cosco Shipping Holdings) 등 대형 선사는 유휴 선박이 발생하더라도 재정적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음
 - 반면 중소 선사는 중국 물량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유휴 선박이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대비책이 없음
 - 중국에서 일본, 한국, 필리핀 등의 목적지까지 지역 운송 라인을 가진 수십 개의 중소 선사가 2분기에 현금흐름에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중소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과 긴급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2분기 중 도산하는 중소 선사들이 나타날 것이며, 선박, 연료, 기타 서비스 등을 중소 선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산업이 함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중소 선사는 2차 항만에서 주요 관문으로 상품을 운송하여 소규모 시장을 글로벌 거래시장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공급사슬의 중추 역할을 함
 - 중소 선사의 도산이 세계 무역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소 선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운·물류업계의 협력이 요구되며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wsj.com/articles/shippings-smaller-operators-are-most-susceptible-to-the-corona-virus-financial-impact-11582799403/> 2020.3.4.

김한나 연구원

051-797-4588, h.kim@kmi.re.kr

스마트해운위원회, ISO 19848 데이터 표준 동의

- 스마트해운위원회(Smart Maritime Council, 이하 SMC)는 선박의 기계장비 표준인 ISO 19848 데이터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함
 - SMC는 해운산업 내 기술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Smart Maritime Network에 의해 만들어진 범산업(cross-industry) 그룹으로, 로테르담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ISO 19848의 목표는 다른 시스템이 추가적인 사용자 정의 없이 선박 데이터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음
 - ISO 19848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의 기술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채택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장비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면, 해당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 디지털화의 핵심 장벽을 제거할 수 있음
 - 위원회 참여자 중 하나인 OSM 그룹의 Peter Schellenberger 상무는 “이 표준은 고객 및 기타 업계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술/IT/통신 공급자가 포함된 매우 의미 있는 이니셔티브이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요한 첫번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참여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볼 수 있는지 테스트할 것”이라고 말함
- ISO 19848은 선박 기계장비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표준이며, 선박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처리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탑재된 기계 및 장비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 및 데이터 구조의 규칙을 정의하고 있음 (우윤태 외, 2018)
 - 아래 그림의 상단 부분(2)이 ISO848의 개념 모델을 정의한 것으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형식을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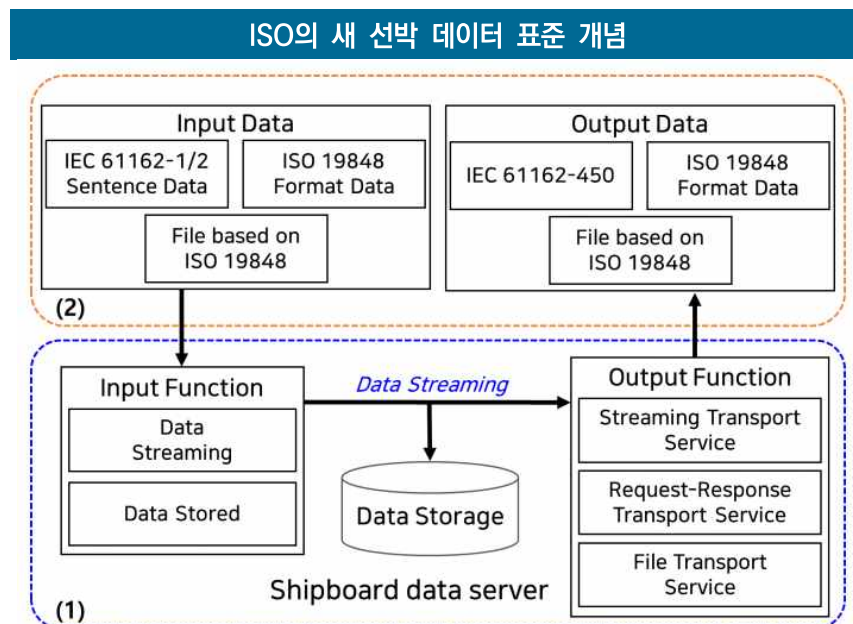


사진 : 우윤태 외(2018), p.1579.

■ 참고자료 : Port Technology, Smart Maritime Council agrees data standards, 2020.02.27.
우윤태, 황훈규, 김배성, 신일식, 정희석, 박민식, 이장세, ISO 19847/19848 기반 해상



필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선박 기관부 데이터 관리 플랫폼 개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2, No. 12, pp.1577-1588, 2018.12.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공지사항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3.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 ~ 2020. 4. 3(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1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②	사업제안서 10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⑥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e-mail 접수 불가

선정 기준 및 방법

□ 선정 기준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